Policy and Law Report _Vol.29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3. 30. ~ 4. 3.)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주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맞추어 “주요 정당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1]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2020. 3. 31.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하기 위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시행함. 주요 내용으로 ①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 미적용(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제외), ②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담합규정 적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위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3. 31.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신용 등급 관련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제도 폐지(현행 제8조 제1항 제2호 삭제), ②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면제되도록 직불 합의 기한 설정(안 제8조 제1항 제3호)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3] 드론 사업자에 대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 4. 1. 드론 사업자가 드론을 제조 대여 판매할 때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기한: 4. 21.). 주요 내용으로 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사의 준수사항 표시 의무 신설, ② 송수신 가능 거리 이탈 시 추락할 위험 표시 의무 신설, ③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6개월 부여 등이 있음

[참고자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기부1] 주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발표

2020. 3. 30.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 창출을 위한 주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 익명화(비식별) 처리를 가공업무에 포함시켜 분야별 가명정보 가공 수요를 집중 발굴 및 지원, ② 개인데이터의 양적 질적 활용 가능성이 풍부한 8개 분야(의료, 금융, 공공, 유통/물류, 문화, 통신/미디어, 교육, 기타 에너지 등)로 확대, ③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데이터 유통 활용체계 조성, ④ 최신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분석기능 개발 및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데이터 활용 지원 본격 추진

[과기부2]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개시

2020. 3. 31.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를 개시함. 주요 내용으로 ①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분야 등 10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 현황 제공, ②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이 생산 개방하는 데이터 현황을 분야별, 유형별, 주제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각화한 통계정보 제공, ③ 전문 분야 및 사회 현안 등 다양한 주제로 분석 시각화한 사례를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 등이 있음(URL http://www.bigdata-map.kr)

[참고자료]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개시

[중기부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 3. 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함(기한: 5. 6.). 주요 내용으로 ① 액셀러레이터가 연기금 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시 벤처투자조합을 조성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보유 전면 허용, ③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7년) 폐지 등이 있음

[참고자료] 벤처투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기부2]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2020. 4. 2.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 ①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전문가의 현장 진단 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완관제 서비스 제공, ②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 확대 도입 및 창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 신설, ③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참고자료] 별첨_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데이터3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0. 3. 31.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고, 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②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신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5), ③ 그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통합 반영(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2까지), ④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신용정보보호법 제18조의6, 제28조의3)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신용정보보호법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6)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9회 정책설명회 자료(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표준종합정보DB 개방 개시

4월 초부터 금융공공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 ① 금융위원회 및 9개 금융공공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보유 금융데이터 개방, ② 대상 데이터는 5개 핵심 분야 테마 정보(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로 구성(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 ③ 순차적으로 금융공공데이터 오픈 API를 개방(등록)하여 4월 29일까지 모든 API 개방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공공데이터 보도자료

[참고자료] 별첨1_금융표준종합정보DB개방 시스템 체계도

[참고자료] 별첨2_금융공공데이터개방항목

[참고자료] 별첨3_금융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오픈API 신청안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공포

2020. 3.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 주요 내용으로 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 및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 부여, ③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재부]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3. 3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SOC사업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②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국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2개 사업(19.6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고시, ③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되,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을 20%까지로 하향 조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3. 31.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영역 마련, ② 단순 중개 서비스 외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③ 플랫폼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 표준화, 요금 등 규제 완화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시대 개막

*** 코로나19 관련 업종 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추가)**

분야	내용
관광	• 공항상업시설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상향(25→50%), 대 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 감면 •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공사 현금흐름 애로 등을 감안하여 정부배당금 납입 시기 조정(기재부 배당업무지침 개정 예정) •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가를 유예(기존 등급 유효기간 연장)하여 업계 부담완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등
영화	• 영화관의 실질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20. 2월분부터 소급하여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 추진 •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의 개봉 마케팅 지원(20여편), 영세상영관 대상 영화상영 기획전 운영 지원(200여개 극장) •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의 촬영·제작 재개를 위해 제작지원금 지원(20여편) 등
통신 방송	• 중소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 공사업체(630여개) 등 긴급지원 확대(누적 약 4,200억원, 통신사 협조) •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임대료·운영자금 등 지원(1,370억원), 채권(단말기 외상구입) 이자상환 유예(1,106억원) 등 당초 1,421억원에서 1,055억원 추가 지원 • 공사업체(1만개), 중소장비업체 등에 일감 확대를 위해 '20년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투자 대폭 확대(2.7조원 → 4조원) 등
금융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용도로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내 특별한도 부여(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에 대해 수출입 해외진출 사업 지원 용도로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 코로나19 피해업종 중견 대기업 대상으로 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한도로 1.68조원(추후 6.7조원까지 확대) 지원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윤정의원 등 10인)]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안 제10조의2 제1항 제7호 및 제15조의2 제3항 제4호 신설 등)

※ 같은 취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윤정의원 등 10인)](안 제16조의 2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윤정의원 등 10인)]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과거 메르스 사태를 보면 감염병은 더 이상 단발성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여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함.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한 업종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와 같은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또는 제재 등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재난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77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이에 불법정보에 불법촬영물을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3. 주요 정당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

* 정당명은 가나다 순입니다.

정당명	정책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체_더불어민주당	10대공약_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전체_미래통합당1	전체_미래통합당2	10대공약_미래통합당
민생당	전체_민생당	10대공약_민생당	
정의당	전체_정의당	10대공약_정의당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02-316-4630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02-316-4432
sbkim@shinkim.com

홍정아
선임외국변호사
02-316-4487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02-316-1773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02-316-2573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02-316-1777
jysung@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